교직원명예퇴직에관한시행규칙 4-2-15

규정번호	4-2-15
제정일자	2012.2.26
최근개정	2024.7.24
개정차수	3차 개정
관리부서	교무입학팀 총무회계팀

제1조(목적) 이 시행규칙은 학교법인 명지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명예퇴직규정에 의하여 우리대학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(이하 "교직원"이라 한다)의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자격)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, 정년퇴직까지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. 이 경우 근속년수의 산정은 법인 인사규정 제16조의2에 따른다.(개정 2024.7.24.)

제3조(신청의 제한) ①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1. 징계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
2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
3. 그밖에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, 예산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 신청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4조(명예퇴직 절차) 명예퇴직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공지 : 총장은 명예퇴직 대상, 신청기간, 수당지급방법 등을 명예퇴직 신청기간 20일 전에 공지한다.
2. 신청 :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교직원 명예퇴직 신청서를 매 학기말 60일전까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.
3. 대상자 결정 : 총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고,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4. 대상자 통지 : 총장은 대상자가 결정되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5. 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: 명예퇴직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한다.
6.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허가에 의하여 행한다.

제5조(명예퇴직 신청방법)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(별표1)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,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직원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매 학기말로 한다.

제6조(명예퇴직심사위원회) ①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심사위원회

를 둔다.

② 심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

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

제7조(심사 및 선정) ① 명예퇴직 심사위원회는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.

1. 공상으로 폐질 상태에 있는 교직원
2. 장기근속 교직원
3. 상위직 교직원

② 명예퇴직 신청자가 명예퇴직 심사·결정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

제8조(명예퇴직수당) ① 명예퇴직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며,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은 별표2와 같다.

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(사무관장) 명예퇴직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교원은 교무처에서, 직원은 사무처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부 칙

이 시행규칙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규칙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, 별표1, 별표2)

(별표1) (개정 2024.7.24.)

교직원 명예퇴직신청서

소 속			교직원 구 분	□교원 □직원	직 급	
성 명	한 글		주민등록번호			
	한 자		주 소			
전화번호(자택)			근 속 연 수			
정년월일			정년까지 남은 기간 (수당지급대상기간)			
명예퇴직 신청사유						

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정관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 청 인 : (인)

소속 부서장 : (인)

명지전문대학 총장 귀하

(별표2)

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

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	산 정 기 준
가. 1년 이상 5년 이내 인자	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× 정년까지 남은 월수
나.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자	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× $(60+\frac{(\text{정년잔여월수}-60)}{2})$
다. 10년 초과인 자	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(10년을 초과하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)

※ 비고

1.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까지 남은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, 정년까지 남은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24.7.24.)
2. 월 봉급액은 봉급과 연구지원비(교원) 또는 업무지원비(직원)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 (개정 2004.3.1., 2007.3.1)
3. 일반직 3급 이상 연봉 적용자의 월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해당 직급 해당호봉의 월 지급액과 업무지원비 합산액을 말한다.(개정 2004.3.1.)